

1. 개정이유

약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, 약국 실태조사에 관한 시기·방법,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, ‘약국개설자(개설하려는자 포함)-의료기관개설자’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·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른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현장조사,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
나.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·주소,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
다. 약국개설자(개설하려는자 포함)-의료기관개설자’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·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(실태조사의 시기·방법, 결과 공표의 방법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·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.

②실태조사는 현장조사,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9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.

1. 약국의 명칭 및 주소
2. 약국개설자의 성명
3. 위반사항

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II.개별기준 제20호 파.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파.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24조의2, 제4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(신 설)	제9조의3(실태조사의 시기·방법, 결과 공표의 방법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·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. ②실태조사는 현장조사,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9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법 제20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. 1. 약국의 명칭 및 주소 2. 약국개설자의 성명 3. 위반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[별표3] 행정처분의 기준	[별표3] 행정처분의 기준

I. 일반기준(생략) II. 개별기준 1.~19. (생략) 20. 가~타.(현행과 같음) 파.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4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	I. 일반기준 (현행과 같음) II. 개별기준 1.~19. (현행과 같음) 20. 가~타.(현행과 같음) 파.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24조의2, 제4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--	---